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

- 1)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
- 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

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나.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

- 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
- 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영업허가·신고·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

- 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

- 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
- 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를 한 자”를 “등록을 한 자”로, “신고를 한 제조업소”를 “등록을 한 제조업소”로 한다.

2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증과 다음”을 “다음”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를 “신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신고증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증과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변경내용”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일반음식점영업자”를 “일반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로,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당한다)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별지 제51호의3서식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증원의 장”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인증원의 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87조제5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5)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4)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4)가)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전의 마목)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중전의 바목) 중 “식초”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한다.

별표 23 I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1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가. 제조·가공업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

우: 위반행위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

나. 제조·가공업의 영업정지 처분: 위반행위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

별표 2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규: 28,000원(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9,300원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가목1) 중 “5,000,000원”을 “8,500,000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2,900,000원”을 “4,9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1) 신규신청

가) 식품 원료 중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45,000,000원

나) 식품 원료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3,000,000원

다)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3,000,000원

2) 변경신청

가) 300,000원

나) 대표자, 업체명(또는 품목명, 기관명) 및 제조업체(또는 개발사), 소재지, 원료명(또는 품목명, 상품명): 면제

별지 제30호서식 신고사항 중 “등록기준지” 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출서류 중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허가증 1부”를 삭제하고,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 허가증 1부”를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수수료 “28,000원”을 “28,000원(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9,3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중 첨부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등록의 경우 “가. 영업등록증 1부”를 삭제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 영업등록증 1부”를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첨부서류 중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승계를 받는 사람 중 “등록기준지”란을 삭제하고, 유의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로 하고, “제5호”를 제1호“라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 및 별지 제5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 제61조의3, 별지 제51호의3서식 및 제51호의4서식 개정규정 중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관련 부분은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1호가목, 제2호가목·다목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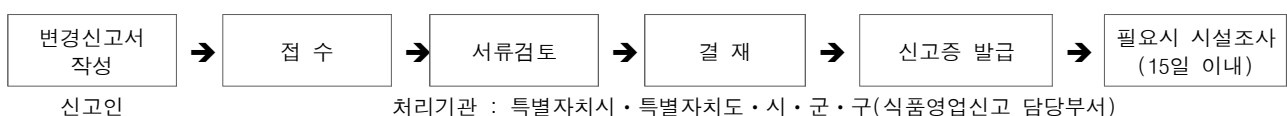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삭 제>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6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삭 제>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소명	인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최초 영업 신고증 발급일 (집단급식소의 경우 설치운영신고증 발급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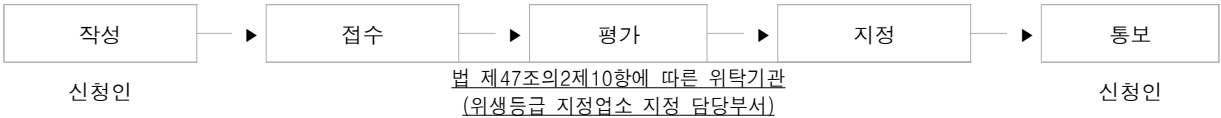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소명칭, 인허가번호(11자리), 영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장 소재지는 영업신고증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2.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인허가번호(11자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장 소재지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과 동일하게 적고, 영업의 종류는 집단급식소로 적습니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은 대표자 또는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을 적습니다. 4. 최초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발급일은 신고증의 뒤쪽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최초 발급일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위생등급 지정서

- 대 표 자: (생년월일:)
- 업 소 명:
(시설명칭)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등 급: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3. ~ 6. (생략)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3. (생략)

② (생략)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3. ~ 6.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을 한 자-----

---- 등록을 한 제조업소 ----

-----.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

----- 다음 -----

제출해야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 신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

----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

-- 다음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제44조(폐업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변경내용-----

-----.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야 한다.

③ (생략)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① -----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
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
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
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
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
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

----- 일반음식
점영업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 -----
----- 해당한다) 또
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별지
제51호의3서식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
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
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
야 ---.

② -----
인증원의 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

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 10. (생략)

11. 특수용도식품

<신 설>

12. ~ 13. (생략)

--- 인증원의 장-----

-----.

② -----
----- 인증원의 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12.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 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 을 표시하는 <u>증표</u>는 별지 제18 호서식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증표(전자문서로 발 급된 증표를 포함한다)</u>----- -----.
---	---